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12507(본소), 2019가합11570(반소) 판결
[공사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재판경과

광주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0나24020(본소), 2020나24037(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9. 17 선고 2018가합1250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수, 이원석, 조영윤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2.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피고(반소원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승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광수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변론종결 2020. 8. 13.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936,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소와 반소, 피고(반소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 청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96,118,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2018. 11. 6.까지는 연 6%의, 2018. 11. 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577,478,873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 대표 G은 2016. 11. 24. 여주시 H에 있는 호텔 I(변경 전: J 호텔, 이하 '호텔'이라고 함)에 K 시스템 냉·난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함)를 설치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 G은 2017. 8. 21.경 원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피고에게 이관하기로 합의하였다(단, 계약금액은 848,000,000원에서 862,653,000원으로 증액됨).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0.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기한을 2018. 3. 16.로 변경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8. 4. 16.까지 공사기한을 연장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2018. 4. 16.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설비만으로 호텔의 냉방용량을 충족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 자체의 하자도 있다. 이 사건 공사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냉방용량 부족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존재하는 하자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냉방용량 부족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당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공사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의 채권액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상회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과의 대등액에서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설비만으로 호텔의 냉방용량을 충족하지 못함에 대한 피고의 책임 여부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20. 4. 14.자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설치된 이 사건 설비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비만으로는 호텔의 1일 최대 냉방용량의 47.65%만 감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하는 도급계약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에게 호텔의 1일 최대 냉방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냉방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자 없이 완료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사로 호텔의 냉방용량을 충족시킬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설비만으로 호텔의 냉방용량을 충족하지 못함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표1 기재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호텔의 냉방용량 충족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63,586,191원인데, 총공사금액에 비하여 크다고 보이지 않고, 하자의 내용에 비추어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갑 제11, 14, 1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19. 11. 21.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1과 같은 보수비용 합계 63,586,191원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표1>

하자	보수비용(단위: 원)
미시공 및 변경시공,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현재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없으나 장차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	8,421,733
냉매배관, 축열조 내부의 부식, 파손여부	1,215,807
열교환배관의 사양미달 여부, 급수와 환수 온도차이가 정상수준인 10℃ 정도를 유지하는지 여부	4,964,169
8번 축열조의 열교환배관 설치 여부	1,038,511
1번, 2번, 3번, 8번 축열조의 배수용배관(이른바 'Drain')밸브의 설치 여부	1,619,761
각 축열조의 온도계, 압력계, 온도센서, 진동방지를 위한 이른바 'Flexible 방진고무, 동배관 Support, 수위조절밸브 케이블선 설치 여부	5,075,529
J 호텔 M호 팬코일유니트가 반대방향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796,122
빙축열탱크와 호환되는 축열조 실외기의 용량 및 실외기의 증발기 계통의 문제점 점검	10,781,956
축열조와 순환되는 보일러까지의 배관연결 방식(기존 방식의 문제점 점검)	5,670,176
축열조 실외기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식의 문제점 점검	3,699,648
인버터 보일러 중 3번 온수보일러(탱크) 정상 설치 여부	906,091
인버터 펌프 납품 여부	14,138,689
감리자에게 제출한 설계도면과 차이가 있는 탱크 내 설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열교환장비 설치 여부, 헤더 설치 여부 등)	5,257,999
합계	63,586,191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합계액 63,586,19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호텔의 냉방용량 충족을 위한 비용 413,750,846원 및 냉방 불량에 따른 긴급 에어컨 설치비용 47,643,761원의 지급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호텔의 냉방용량을 충족하지 못함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긴급 에어컨 설치비용 역시 냉방용량 충족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을 제6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L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L에 대한 2019. 11. 21.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합계액 151,710,517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가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2〉

순번	공사내용	공사비용(단위: 원)
1	실내기 추가설치	12,068,529
2	각층(지하층~12층) 주관배관, 가진관 배관에 보온재를 25T에서 32T, 40T로의 교체	23,461,877
3	각층(지하층~12층) 출입구 볼밸브 추가 시공	7,250,083
4	추가 신축이음(3층 4개) 시공	3,944,282

5	인버터 펌프 교체(15HP 2대 1세트) 시공	22,000,000
6	기계실 판형 열교환기 설치 시공	26,804,000
7	3, 4층 누수로 인한 재배관 설치 등 추가 보수작업	5,815,000
8	3, 4층 실내기 이전설치(안쪽→창쪽→안쪽)	10,000,000
9	각층 실내기 온수계량기 부착	8,944,043
10	지하온수탱크 연결배관 추가 시공	12,495,659
11	빙축열 3기를 3층에서 지하로 이전 설치	18,927,044
합계		151,710,517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액 151,710,517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한 위 공사들 중 일부는 피고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고, 일부는 추가공사에 하자가 있으며, 추가공사비 산정도 지나치게 과도하고, 일부는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20 내지 22, 27, 29, 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에 모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가 앞서 본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고의 2020. 6. 4.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변제기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2019.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7.이고,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는 이 사건 공사 완공일인 2018. 4. 16.이다.

피고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원금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한다. 따라서 2019. 11. 27. 상계적상일에 도달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원금

63,586,191원과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166,881,568원(=원금 151,710,517원+부가가치세 15,171,051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은 0원이 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피고의 반소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위 상계항변 이후 남은 공사대금채권액 및 그 지연손해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96,936,852원(공사대금채권 166,881,568원에서 상계된 63,586,191원을 제한 금액의 범위 내)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9. 8. 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엽 판사 김동욱 판사 김은솔